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September 01,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캐나다: 재무부,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을 포함한 세법 입법 초안 발표

재무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법(Global Minimum Tax Act) 제정에 대한 입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 이상의 사모투자법인을 포함하는 특정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대해 새로운 비연결(de-consolidation)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투시과세법인(Tax Transparent Entities), 해외 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ies), 하이브리드 및 도관 법인(hybrid and flow-through entities)과 관련된 과세 배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도입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전환 연도(transition year) 이전 회계연도의 구성법인(constituent entities)에 대한 새로운 전환기 규정(transitional rules)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입법 제안에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관한 프레임워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2025년 8월 세법 동향 요약 - 2025년 이전가격 세무조사 프레임워크

말레이시아 국세청(MIRB)은 2025년 이전가격 세무조사 프레임워크(Transfer Pricing Tax Audit Framework, 이하, "TPAF 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 TPAF 2025는 2025년 7월 31일부터 발효되며, 2024년 12월 24일자 TPAF 2024를 폐지합니다.
- TPAF 2025에 따르면,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 구조가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과세연도와 관계없이 이전가격 조정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31일부터는 가산세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조정에 한해 부과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소득세법(MITA) 제113조 2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체코 추가세액(Top-Up Tax): 상원, 제출기한 연장 승인

상원은 체코 추가세액(Top-Up Tax) 관련 정보 보고서 및 세금 신고서의 최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체코 추가세법 개정안을 논의 및 승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령집(Collection of Laws)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체코 추가세액 정보 보고서와 세금 신고서 모두 보고기간 종료 후 10개월 이내 제출해야 했으며, 2024년 회계연도의 경우 그 기한은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연장된 제출 기한

체코 추가세액 정보 보고서는 보고기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초 적용 기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회계연도(최초 적용기간)의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체코 추가세액 세금 신고서는 보고기간 종료 후 2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회계연도의 경우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관련사항

제출 기한의 개정은 현재 준비 중인 추가세액 정보 보고서 및 세금 신고서의 지정 양식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와 정보 보고서가 두 세금에 대해 공통 양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OECD 가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보고서 양식을 기반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DAC 9(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9)¹를 이행하는 법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U 내에서는 하나의 정보 보고서 제출이 가능해지며, EU 외 국가와도 DAC 9 과 유사한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해당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10 월 선거와 새로운 하원 구성 이후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 구합 83335, 2024. 6. 20

제목: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중국법인 업체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정상가격을 토대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전심과정:

- 대법원2025두33231, 2025.06.12
- 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2025.02
- 조심2021서2152, 2022.6.13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20XX년 설립된 폴리프로필렌 제품 제조·판매 회사로, 원고와 다국적 석유화학 그룹 A의 계열사 B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 A는 중국 지역 계열사(C, D)와 태국 지역 계열사(E)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회사는 원고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였음
- 원고는 A 계열사인 H과 수출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제3자 및 국외특수관계법인들에게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판매하였음

¹ EU 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교환 지침

-
- XX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조사에서 원고가 국외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였으며, 이를 배당으로 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하였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원은 “비교대상거래를 다시 산정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음
 - 이에 따라 XX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및 이전소득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남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에 대해 처분을 확정하였음

2) 인정사실

- 피고는 당초 조사에서 원고의 제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결정되는 구조라 보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였음
- 원고가 국외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인식한 원가가산율은 일부 과세연도에서 비교대상 업체의 하위 사분위값에 미달하였음
- 피고는 동일 과세기간·국가별 제3자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거래의 원가가산율을 중위값 또는 비교대상 업체 수준으로 조정하여 소득을 증액하였음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C-D 법인 거래와 비교된 제3자 업체들의 매출 규모 차이가 크고, 매출액이 커질수록 원가가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모든 거래를 그대로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재조사 결정을 내렸음
- 재조사에서 피고는 ① 거래의 계속성, ② 사업 환경, ③ 가격 조건(Formula/Spot 구분) 등의 기준을 반영해 비교대상거래를 재선정하였음
- 재선정된 비교대상거래의 사분위값을 기초로 정상가격 범위를 다시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의 원가가산율이 하위 사분위값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세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고지하였음

3) 쟁점의 정리

- ① 원고와 국외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 간 합의된 가격이므로 정상가격인지 여부
- ② 피고가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함에 있어 거래규모(매출액)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했는지 여부
- ③ 정상가격 산정 시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4항(현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복수 거래가 아닌 단일 거래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판단

쟁점① 원고와 국외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 간 합의된 가격이므로 정상가격인지 여부

판단사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단근거

- 단순히 특수관계 없는 주주회사 간 합의된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
-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현 국조법 제8조 제1항)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이익분할방법,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⑥ 그 밖에 합리적 방법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상가격은 법이 정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거쳐야 함
- 원고 주장처럼 “주주 간 합의”에 의한 가격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통한 산출이 아니므로,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

쟁점② 피고가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함에 있어 거래규모(매출액)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했는지 여부

판단사항: C·D 법인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

판단근거

- 정상가격 산출 시 매출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낮은 거래를 선정
- 비교가능성 평가는 구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현 국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특성·사업기능·위험·자산·계약조건·경제여건·사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함
- 참고자료인 OECD 이전가격 지침도 “제품 판매 거래의 경우 수량의 차이가 납세자와 제3자 간 거래의 비교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납세자와 제3자 거래처의 거래는 유효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교대상회사의 원가가산율 사분위값을 보면 매출액 규모별로 원가가산율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매출액 규모가 원가가산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규모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채 사분위값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쟁점③ 정상가격 산정 시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4항(현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복수 거래가 아닌 단일 거래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됨.

판단사항: 비교대상거래를 1건만 선정했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음

판단근거

-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4항(현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임의규정이므로, 1건만으로도 정상가격 산정 가능함
-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 →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선택 가능성(임의규정)을 의미함
- 입법 취지 역시, 복수의 거래를 토대로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허용한 것이지, 반드시 복수 사례를 요구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유사성이 높은 1건의 독립거래만으로도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함

5) KPMG Opinion

시사점

-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있어 높은 비교가능성을 요구
 - 정상가격범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차이를 조정해야함
- ② 임의규정 해석
 -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4항(현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을 확인
 - 따라서, 비교가능성 충분하다면 단일 거래만으로도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대응방안

- ① 거래규모, 물량, 기능 차이, 계약조건 등 정상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계량화하여 조정 근거를 마련
- ② 복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용하여 교차 검증
- ③ BEPS 보고서에 비교가능성 조정의 근거를 상세히 작성
- ④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등을 통해 사전에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는 전략이 필요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추가 품목 428개,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1.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관세 및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1) 개요**

2025 년 8 월 18 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28 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Section 232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관세가 없었던 품목들이 대거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신속 대응을 돕기 위해 **8월 22일부터 미국 관세 대상 품목과 연계된 한국식 품목번호(HSK)를 정리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식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2) 조치 경과 및 주요 내용

- 단일 관세 품목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 및 파생제품까지 대규모로 포함
- 주요 추가 관세 대상 예시:
 - 엔진 및 부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등)
 -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및 그 부분품
 - 크레인, 호이스트, 엘리베이터 등 권양용·취급용 기기와 부품
 - 중장비 및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불도저 등)
 - 베어링/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
 - 변압기/부분품, 절연전선, 철도차량/부분품
 - 트랙터, 특수 차량(기중기차, 장갑차 등), 화장품 용기 등
-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대조할 수 있도록 제작
- 법적 효력은 없으며, 미국 내 최종 품목 분류는 미국 관세당국에서 판단

- 관세청은 향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연계표를 추가 제공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등을 적극 활용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함



보도자료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에어컨, 변압기, 절연전선, 트랙터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품목 428 개 추가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 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 월 22 일(금)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 이는 **미국 정부가 8 월 18 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 관세부와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 [Link](#)
링크를 접속하면 연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PMG 의견]

최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28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가전·기계 등 완제품 및 부품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화장품 용기 등은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군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미국 내 생산·조립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 내 유통망 및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가격 재조정 협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PMG는 풍부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리스크 진단과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Contact Poin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763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